



2024. 11. 15.

심곡3-1구역 재개발사업

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안내

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, 한 눈에 보기!

• 주민준비위원회의 추진일정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11/10	11	12	13	14	15	16
					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안내	
17	18	19	20	21	22	23
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안내					후보자 등록 신청	
24	25	26	27	28	29	30
후보자 등록 신청					신청 서류 확인	
12/1	2	3	4	5	6	7
	후보자 공고	동의서 징구				
8	9	10	11	12	13	14
동의서 징구		구성 신청서 제출			신청 서류 확인	
15	16	17	18	19	20	21
신청 서류 확인			결정 공고			

• 후보자 등록 신청 2024. 11. 22. ~ 28. 09:00 ~ 18:00

- (후보자 자격요건) 심곡3-1구역 토지등소유자 (지분소유자 포함)

- (후보자 등록장소) 부천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사무실

※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482, 부천종합운동장 (7호선·서해선 부천종합운동장역)

< 신청서류 목록 >

구 분	수량	비고
주민준비위원회의 후보자등록 신청서	1부	별지 제1호 서식
입후보 소견서 * 위원장 후보자에 한함	1부	별지 제2호 서식
후보자 이력서 * 위원장, 부위원장, 감사 후보자에 한함	1부	별지 제3호 서식
주민준비위원회의 운영규정(안)	1부	별지 제4호 서식
후보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	1부	
사진 (최근 3개월 이내, 컬러 3.5cm×4.5cm)	1매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1매	기 제출자 제출 불요

• 동의서 징구 2024. 12. 3. ~ 9.

- (중복 동의 불가) 한 후보자단에만 동의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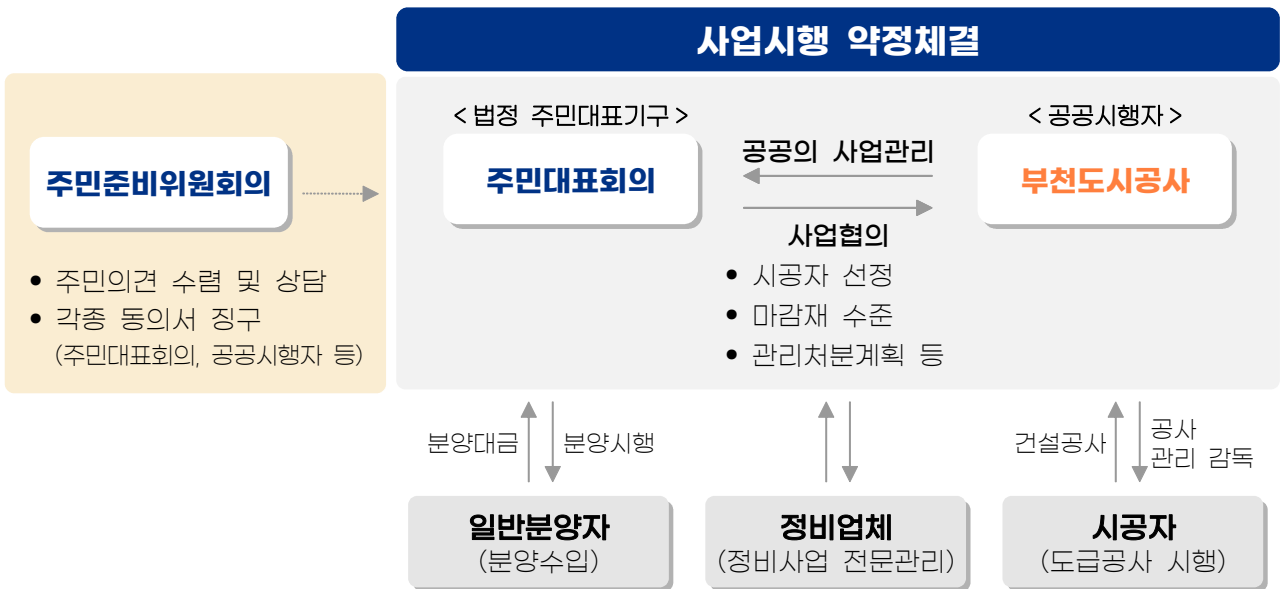
- (전자적 방법 동의) 얼마집(앱)을 통해 동의하는 후보자단 동의서에 서명

- (서면동의) 서면 동의서를 동의하는 후보자단에 기간 내 제출

부천도시공사가 함께하는 공공시행자 방식 재개발사업

- (인허가 절차 간소화) 신속한 의사결정 / 정비사업계획 / 통합심의
- (공정·투명한 사업관리) 갈등 예방 / 투명성 제고
- (사업비절감) 합리적 공사비 책정 / 각종 부대비 미발생 / 모든 개발이익 주민에게 귀속

< 사업추진 체계 >



주민준비위원회의

공공재개발사업에서 법정단체인 주민대표회의 구성 전까지,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,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 및 주민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단체

- (위 원) 5 ~ 25명 * 임원 포함
- (임 원) 최대 5명 (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감사 1 ~ 3명)
- (임 기) 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일 ~ 주민대표회의 구성 전일까지
- (주민동의) 단독소유자 및 지분소유자 30% 이상 동의서 징구
- (주민투표) 복수단체 지원 시, 주민투표 실시
- (수행업무)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지원, 주민 홍보와 상담 지원 등

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

• 추진일정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11/10	11	12	13	14	15	16
					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안내	
17	18	19	20	21	22	23
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안내					후보자 등록 신청	
24	25	26	27	28	29	30
후보자 등록 신청					신청 서류 확인	
12/1	2	3	4	5	6	7
	후보자 공고	동의서 징구				
8	9	10	11	12	13	14
동의서 징구		구성 신청서 제출			신청 서류 확인	
15	16	17	18	19	20	21
신청 서류 확인			결정 공고			

- **구성 안내 공고** 2024. 11. 15. ~ 21.
 - **후보자 등록 신청** 2024. 11. 22. ~ 28. 09:00 ~ 18:00
- (후보자 자격요건) 심곡3-1구역 토지등소유자(지분소유자 포함)

※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

- 심곡3-1구역 토지등소유자(지분소유자 포함)가 아닌 자
- 정비사업(재개발, 재건축 등)의 조합,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자·설계자·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
- 임원 후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* 추후 관련 사실이 발견된 후보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

- **(후보자 등록 장소)**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사무실

※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482, 부천종합운동장 (7호선·서해선 부천종합운동장역)

- **(후보자 등록 방법)** 신청서류를 작성하여, 신청 기간 내 부천도시공사 방문 또는 우편제출

< 제출서류 목록 >

구 분	수량	비고
주민준비위원회의 후보자등록 신청서	1부	별지 제1호 서식
입후보 소견서 * 위원장 후보자에 한함	1부	별지 제2호 서식
후보자 이력서 * 위원장, 부위원장, 감사 후보자에 한함	1부	별지 제3호 서식
주민준비위원회의 운영규정(안)	1부	별지 제4호 서식
후보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	1부	
사진 (최근 3개월 이내, 컬러 3.5cm×4.5cm)	1매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1매	기 제출자 제출 불요

- **(후보자 사퇴)** 후보자 등록 완료 후,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

- **(사퇴방법)** 당사자가 직접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를 방문하여 서면 (별지 제5호 서식)으로 사퇴를 요청하고 소속 후보자단에 알려야 함
- **(후속조치)** 사퇴 임원 또는 위원 후보를 제외하거나 새로운 임원 또는 위원 후보로 대체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, 주민준비위원회의 후보자등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새로 작성하여 반드시 등록 기간 내에 제출

※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

-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,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18시까지 등록장소에 도착하여야 함
- 필수서류에 흠결이 있어 보정·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내에 이를 보정·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할 수 있음
- 임의 탈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또는 위원 후보 사퇴 후 수정된 주민준비위원회의 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, 후보자단 등록이 불가함

• **동의서 징구** 2024. 12. 3. ~ 9.

- (동의서 징구 주체) 후보자단 (위원장, 부위원장, 감사, 위원 모두 포함)
 - (동의서 징구 방법) 전자적 방법 동의 또는 서면동의 중 선택
 - (중복 동의 불가) 한 후보자단에만 동의 가능
 - (전자적 방법 동의) 얼마집(앱)을 통해 동의하는 후보자단 동의서에 서명
 - (서면동의) 서면 동의서를 동의하는 후보자단에 기간 내 제출
- ※ 서면동의서 징구 시, 후보자단은 주민준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
- (선거운동) 전화 (문자메시지 포함), 정보통신망 (SNS 포함), 입후보 소견 게시
- ※ 입후보 소견은 앱(얼마집)과 현장에 게시물 게시

□ **제한 · 금지행위**

1. 누구든 자기 또는 특정인을 위원(임원포함)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
 - 가.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·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,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 - 나.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
 - 다.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, 지침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,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2. 누구든 제1호 가목부터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
3. 누구든 본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,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
4. 누구든 선거사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선거인명부를 열람·사용 또는 유출할 수 없음

□ **당선무효**

1.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신분증명서 등 각종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여 당선된 때
2. 당선 이후 확정된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

● **구성 신청서 제출** 2024. 12. 10. ~ 12. 09:00 ~ 18:00

- (신청서 제출 장소)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 사무실

※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482, 부천종합운동장 (7호선·서해선 부천종합운동장역)

- (신청서 제출 방법) 동의율 (30% 이상) 충족 시, 신청서류를 작성하여, 신청 기간 내 부천도시공사 방문 또는 우편제출

< 제출서류 목록 >

구 분	수량	비고
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신청서	1부	별지 제6호 서식
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명단	1부	별지 제7호 서식
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동의서 (서면동의) * 전자적 방법(앱) 동의 시, 제출 불요		별지 제8호 서식
소유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* 전자적 방법(앱) 동의 시, 제출 불요	1부	
주민준비위원회의 운영규정(안)	1부	별지 제4호 서식

● **주민준비위원회의 결정 공고** 2024. 12. 1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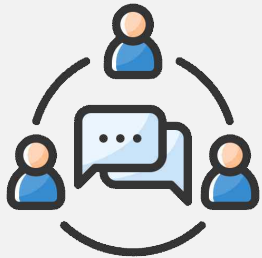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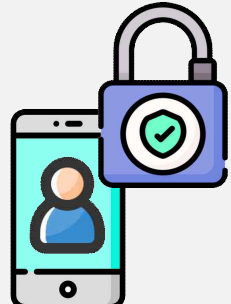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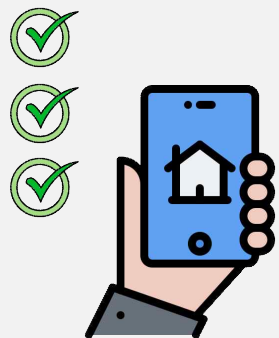
◦ (최종 신청 후보자단이 1개일 경우) 투표기간 종료 후 동의율 30% 이상 시 확정

◦ (최종 신청 후보자단이 2개 이상일 경우) 투표기간 종료 후 동의율 30% 이상인 후보자단 중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

※ 단, 투표기간 종료 후 한 후보자단이 과반수 동의율 획득 시 구성 확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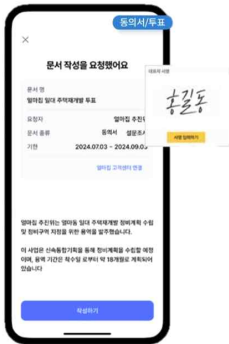
재개발사업 앱 하나로 빠르고 투명하게 얼마집

• 활용장점

		
<p>신속하고 투명한 사업</p>	<p>안전성과 신뢰성 확보</p>	<p>쉬운 동의서 청구</p>

• 주요 기능

① 전자투표: 동의서 제출 간소화 및 정확한 동의율 산정



- ☑ 클릭만으로 동의서 제출 완료
- ☑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간편한 본인인증
- ☑ 전자 방식으로 집계되는 정확한 동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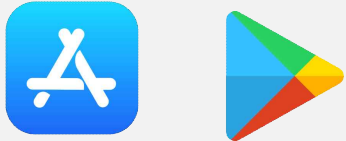

② 간편인증: 확인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기




- ☑ 본인 인증 강화 및 참석자 관리 간편화
- ☑ 앱으로 빠른 공지 확인과 수시 열람 가능
- ☑ 인증된 소유자들만 교류 가능

• 다운로드 방법

1) 직접 “얼마집” 다운로드

① 플레이 스토어, 앱스토어 열기	② [얼마집] 검색 후 다운로드
 <p>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</p>	 <p>얼마집 인증된 집주인들의 익명 커뮤니티</p> <p>열기</p>

2) QR코드

QR코드	다운로드 방법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휴대폰 카메라를 켜다②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간다③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클릭④ 다운로드

별 지 목 차

- # 별지 1. 주민준비위원회의 후보자등록 신청서(입후보 시)
- # 별지 2. 입후보 소견서(입후보 시)
- # 별지 3. 후보자 이력서(입후보 시)
- # 별지 4. 주민준비위원회의 운영규정(입후보 시, 구성 신청 시)
- # 별지 5. 후보자 사퇴서(필요 시)
- # 별지 6. 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신청서(구성 신청 시)
- # 별지 7. 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명단(구성 신청 시)
- # 별지 8. 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동의서(구성 신청 시)
- # 별지 9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필요 시)

상기인들은 심곡3-1구역 주민준비위원회의 위원(임원) 후보에
입후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(위원장 후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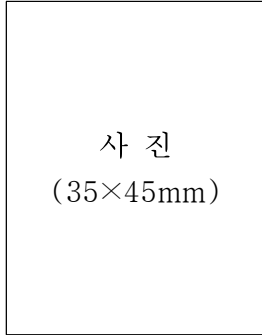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부 천 도 시 공 사 귀 중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별지 2. 입후보 소견서(입후보 시)

입후보 소견서



⇒ (양식변경 불가) A4규격용지 단면 1페이지 이내, 글꼴
휴먼명조, 크기 12p, 줄간격 160%

년 월 일
심곡3-1구역 주민준비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자 ○ ○ ○

별지 3. 후보자 이력서(입후보 시)

글꼴 돋움체, 크기 11p

후보자 이력서

사 진 (35×45mm)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	
	e-mail			
학력사항 (선택)	재학년월	학 교	학 위	전 공
경력사항 (선택)	기 간	경력내용	기 간	경력내용
자격증 보유현황 (선택)	취득년월	자 격 증 명	인가관리기관	비 고
수상현황 (선택)				
그 밖의 사항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와 같이 심곡3-1구역 주민준비위원회의 임원 후보자 이력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부천도시공사 귀중</p>				

별지 4. 주민준비위원회의 운영규정(입후보 시, 구성 신청 시)

주민준비위원회의 운영규정(안)

2024. 00.

심곡3-1구역 공공시행 재개발사업
주민준비위원회의

심곡3-1구역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 운영규정(안)

제1조(목적) 본 운영규정은 심곡3-1구역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을 위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, 홍보 등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준비위원회의를 운영코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준비위원회의는 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(지분소유자를 포함한다, 이하 “토지등소유자”) 5~25인 이하의 준비위원(이하 “위원”)으로 구성되며,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소 3인의(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는 필수) 임원을 둔다.

1. 위원장 1인

2. 부위원장 1인

3. 감사 1~3인 (위원장·부위원장 제외)

② 주민준비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)은 주민준비위원회의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고 의장이 된다.

③ 감사는 주민준비위원회의의 업무 및 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하고, 주민준비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주민준비위원회의의 사무를 주관한다.

⑤ 주민준비위원회의를 구성코자 하는 자는 임원 및 위원 구성안을 부천도

시공사에게 제출하고, 토지등소유자(지분소유자포함, 만 14세 이상) 30%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로 선출한다.

⑥ 임원 및 위원은 선출되는 날 현재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한다.

⑦ 임원 및 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민대표회의, 정비사업(재개발, 재건축 등)의 조합,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사·설계자·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⑧ 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명된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해임되며, 제3조에 의한 주민준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교체·추가·해임할 수 있다.

⑨ 주민준비위원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(임원 포함)의 교체 및 해임 결의
2. 운영규정의 변경
3. 위원(임원 포함)의 보궐 선출 계획
4. 운영경비 집행계획 수립·결의

- 5. 중요 홍보사항의 결정
- 6. 부천도시공사와의 협의사항
- 7. 기타 운영규정으로 정한 사항

⑪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준비위원회의 의결 전 부천도시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, 변경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전체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통하여 통지해야 한다.

⑫ 주민준비위원회의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을 부천도시공사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한다.

제3조(주민준비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) ① 주민준비위원회의는 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, 수시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 개최한다.

② 제①항의 회의는 개최 3일 전까지 통보되어야하고, 회의 시에 안건 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한다.

③ 사안이 긴급할 경우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.

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.

⑤ 제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1. 위원의 교체 및 해임 결의
- 2. 운영규정의 변경

⑥ 주민준비위원회의는 서면결의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비대면 방법으로 의

결할 수 있다.

⑦ 위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. 다만,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며,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운영경비 조달 및 감사) ① 운영경비는 사무소의 운영, 사업추진관련 비용 등 아래의 각호로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며, 위원장은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공과금 :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
2. 임차료 : 사무실 및 창고 임대료, 관리비
3. 통신비 : 통신회사, 전자통신, 우편 등
4. 업무활동비 : 위원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참석하는 각종 회의, 대주민설명 및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
5. 비품 : 업무용 기자재, 가구 등
6. 소모품비 : 사무용품 등
7. 광고선전비 : 사업추진 및 업무관련 모든 인쇄물 광고비
8. 여비교통비 : 출장비, 주차비, 업무관련 교통비용 등
9. 수도·광열비 : 상수도, 전기 및 난방유류비 등 에너지비용
10. 인건비 : 사무직원의 급료(임원 및 위원이 상근시 지급가능)
11. 잡비 :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비용 중 앞에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의 지출 등

② 위원장은 위원들의 회의비 지급 등 운영경비에 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주민준비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며 매월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감사는 주민준비위원회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경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수시 감사하여야 하며, 감사 실시 결과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준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통장의 개설 및 관리) 주민준비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원 중 1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며, 통장과 도장은 별도의 관리자를 정해 보관한다.

제6조(증빙서류)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,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써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원본에 의하여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사본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준비위원회의의 의결을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“부천도시공사”와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주민대표회의 구성 전일까지 효력을 발휘한다.

제2조(운영경비의 추인) 본 규정으로 시행한 행위 중 사용경비에 대하여는 추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, 주민총회를 통해 추인할 수 있다.

별지 5. 후보자 사퇴서(필요 시)

후보자 사퇴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
성명	
사무소명	
소재지	
전화	사무소 () - 휴대전화 () -

상기 본인은 심곡3-1구역 주민준비위원회의 ()직을 사퇴합니다.

년 월 일

직책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부천도시공사 귀중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별지 6. 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신청서(구성 신청 시)

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		
주민준비위원회	주민준비위원회의 명칭		심곡3-1구역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			
	위원장	성명		생년월일		
		주소		전화번호		
	정비사업종류			위원수		
	주된사무소 소재지			전화번호		
	구성내역	사업구역	구역명칭	심곡3-1구역		
위치			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94번지			
동의사항	소유자수	(토지소유자:)	명	동의율	서면동의	%
		(건축물소유자:)	명		전자동의	%
		(토지 및 건축물소유자:)	명		합계*	%
		*합계 비율 산식 =동의자 수/소유자 수				

위와 같이 주민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부천도시공사

귀중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명단 2. 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동의서 3. 주민준비위원회의 운영규정(안)
--------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별지 7. 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명단(구성 신청 시)

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명단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직책	성명	생년월일 (1900-00-00)	주소 (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)
위원장	(예시)홍길동	(예시)1900-00-00	(예시)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94,000호
부위원장			
감사			
위원			

위와 목록과 같이 심곡3-1구역 주민준비위원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(위원장 후보)

(서명 또는 인)

부 천 도 시 공 사 귀 증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별지 8. 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동의서(구성 신청 시) ※ 앱에서 동의 시 제출 불요

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동의서

I. 소유자 인적사항					
인 적 사 항	성 명			생년월일	
	주민등록상 주소			전화번호	
소유권 현 황	권리 내역	토지	소재지(공유여부)		면적(㎡)
			(계 필지)		
			()		
		건축물	소재지(허가유무)		동 수
			()		
			()		
		지상권 (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)	설정 토지		지상권의 내용

II. 동의사항					
1. 사업개요	사업명	심곡3-1구역 공공시행 재개발사업			
	사업대상지	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94번지			
	예비사업시행자	부천도시공사(단독시행)			
2. 주민준비위원회의 명칭	심곡3-1구역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				
3. 주민준비위원회의 구성 ※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.	직 책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
	위원장				
	부위원장				
	감사				
	감사				
	감사				
	위원				
			(뒤 쪽)		

4. 주민준비위원회의 주요업무	(1)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동의서 징구 (2)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, 홍보 업무 및 주민의견 수렴 (3)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
5. 운영규정	※ 별첨
6. 구성방법	신청을 원하는 자는 <u>소유자(지분소유자포함) 30% 이상의 동의</u> 를 받아서 정해진 신청기간 내 예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(1) 후보자단이 단수일 경우에는 투표기간 종료 후 동의를 30% 이상시 선정 (2) 후보자단이 복수일 경우에는 투표기간 종료 후 동의를 30% 이상인 후보 자단 중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 결정 ※ 단, 투표기간 종료 후 한 후보자단이 과반수의 동의를 획득 즉시 당선 확정

Ⅲ. 동의내용

- 가.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·고지 받았습니니다.
- 나. 본인은 Ⅱ. 동의 사항(사업개요, 주민준비위원회의 명칭, 구성, 업무, 활동기간, 운영규정)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기재된 바와 같이 주민준비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, 감사 및 위원으로하여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주민준비위원회의를 구성하고 같은 주민준비위원회의가 Ⅱ. 동의 사항 중 4. 주민준비위원회의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위 동의자 : (자필로 이름을 써넣음) _____ 지장날인

부천도시공사 귀중

신청인 제출서류	1. 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.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 * 기 제출자 제출 불요
-------------	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별지 9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필요 시)

「심곡3-1구역 재개발사업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부천도시공사에서는 「심곡3-1구역 재개발사업」과 관련, 안내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에 이용합니다.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, 자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]

■ 개인정보

소유물건(중복체크 가능)		건물 소유형태	건물번호
<input type="checkbox"/> 건물 <input type="checkbox"/> 토지	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소유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유(지분소유)	※ 건물 소유 시 기재
소유자 성명	거주지 주소		
	※ 우편 수령이 가능한 실제 거주지 주소 기입		
생년월일	연락처	이메일	
. . .	- -		

※ 소유자와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 등 대리인과 연락이 필요한 경우 작성

소유자와의 관계	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녀 <input type="checkbox"/> 형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대리인(참석자) 성명	주 소		
생년월일	연락처	이메일	
. . .	- -		

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수집 기관	수집 항목	수집 목적	보유 기간
부천도시공사	성명, 주소, 소유 물건 정보, 연락처, 이메일	심곡3-1구역 재개발사업	사업완료 시 까지

•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

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 거부 시에는 「심곡3-1구역 재개발사업」에 관한 정보를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.(필수)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※ 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동의서를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 의 자

(서명 또는 날인)

부천도시공사 귀중



부천도시공사

Bucheon, Environment, Social, Transparency